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112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11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20220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장근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봉만수, 전수경

판결 선고 2024. 6. 2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2022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201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3,118,999,510원이고 그중 외상매출금은 약 70% 상당인 2,175,699,048원이며 부채 총액은 1,522,599,251원인데, 위 외상매출금 채권은 2017년부터 폐업일인 2021. 1. 31.까지 C의 자산 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채 남아 있었고, C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위 일자에 폐업하였으며, 폐업 이후에 위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6. 7.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2019. 12. 31. 기준 외상매출금 2,175,699,048원 또는 적어도 2021. 1. 31. 기준 외상매출금 1,776,420,280원 상당의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C가 2020. 1.부터 2021. 1.까지 거래처들로부터 변제받은 외상매출금 1,034,182,809원을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거나 C의 외상매출금 중 당기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5~6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C의 적극재산에서 위와 같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제외하는 이상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의 적극재산에서 외상매출금 채권을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C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2017년부터 2021. 1. 31. 폐업할 때까지 자산 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작지 않은 액수가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C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억 원 이상의 외상매출거래를 하고 그에 준하는 액수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16억 원 안팎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유지하는 구조로 각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 C는 2019년에도 약 54억 원의 외상매출거래를 하였으나 채권회수 금액이 약 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가량 줄어드는 바람에 2019. 12. 31. 기준 외상매출금 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외상매출거래 금액과 채권회수 금액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채권회수 금액이 외상매출거래 금액보다 4억 원가량 많아 2020. 12. 31. 기준 외상매출금 잔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들었다. C의 위와 같은 거래 양상과 영업 현황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 6. 7.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후인 2021. 1. 31. 폐업하였고 폐업 이후 외상매출금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던 C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C의 201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 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에 관한 증명에 있는 이상, 위 외상매출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더욱이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상당 기간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채권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함부로 제외할 수는 없고, 적어도 무자력 상태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거나 폐업신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혹은 이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C의 2019. 12. 31. 기준 외상매출금 잔액 2,175,699,048원 중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해당 연도에 회수되지 못한 684,018,415원을 제외한 나머지 1,491,680,633원(= 2,175,699,048원 - 684,018,415원) 부분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C는 2020. 1.부터 2021. 1.까지 거래처들로부터 2019년에서 이월된 외상매출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1,034,182,809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원고 측에 그 증명의 기회를 주고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C의 거래처들이 무자력이거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는지, C가 2020. 1.부터 2021. 1.까지 외상매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1,034,182,809원 중 2019년에서 이월된 외상매출금이 아닌 2020. 1. 1.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외상매출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C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 온 업체들의 자력 유무나 경영 상태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외상매출금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외상매출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거래처들로부터 변제받은 1,034,182,809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책임재산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신숙희